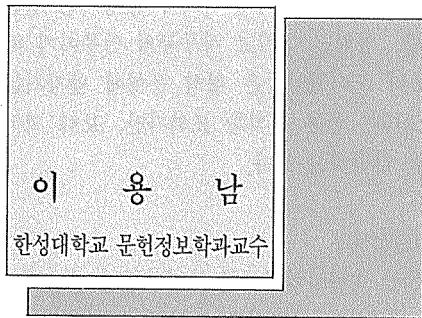


## ● 제2회 전국도서관인큰모임 정책토론——

# 정 책 토 론



두분의 주제발표 내용에 대부분 공감하므로 특별히 강조해야 될 문제만을 제기하겠다.

## I. 도서관 발전을 위한 구심체 진단

그동안 도서관계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을 뿐 아니라 오늘의 발표에서도 주된 촛점을 이룬 부분은 대체로, 우리 도서관의 시설·직원·장서등이 「어떠한 수준」까지 되어야만 하겠다는 논의였다. 그러나 일선의 도서관이 그러한 수준으로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하는 방법의 문제에 대하여서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한다.

즉, 각급 도서관들이 그러한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작업을 누가 구심체가 되어, 어떻게 뒷바지 할 것이며, 그 구조는 얼마나 튼튼하고 항구적이나 의 문제는 곧 도서관 발전을 위한 주춧돌을 세우는 작업이다.

본인은 도서관 발전을 이끌고 갈 제도적인 장치는 다음 3개 기관이 삼각(三脚)의자의 구실을 해야만 한다고 믿는바, 이들 기관이 구심체의 역할을 제대

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질을 더욱 강화시켜야만 하겠다.



### I) 도서관발전위원회

도서관발전위원회는 도서관정책의 개발, 조정, 평가를 위한 가장 중심적인 기관이다. 이 위원회의 효율적인 기능 발휘는 곧 도서관 발전의 요체인만큼 다음 두가지 측면에서 기능강화가 모색되어야 하겠다.

첫째는, 상기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다. 당초 상기 위원회는 교육부 소관 시절의 「도서관법」(1987년)에 처음으로 반영되었다. 미국 NCLIS 등과 같이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은 못될지언정, 국무총리 직속으로 추진하던 도서관계의 여망을 살리지 못하고 장관 직속 자문기구로 출발한 후, 문화부로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상기 위원회는 문화부를 비롯하여 경제기획원, 내무부, 교육부 등 도서관관련 정부부처 인사와 도서관계 인사, 그리고 관련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데, 여러 부처에 상호 관련되는 도서관 정책의 조정 및 협조 기능은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조정기능은, 교육부소관 시절보다 문화부 이관 이후에 더욱 절실한 설정으로서,

주무장관 산하기구로서는 그 역할을 다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교육부 소관 시절 때에는 대부분의 공공, 학교, 대학도서관 등이 교육부 소속 아래 있었으므로 주무장관 산하기구로서도 그런대로 가능할 수 있었겠으나 문화부 이관 이후에는 부처간의 조정·협조기능 없이는 성공적인 도서관 정책 수행이 불가능한 만큼, 국무총리 산하기구로서 격상되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다.

둘째로는, 상기 위원회의 운영이 형식화되지 않고 실질적이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정부산하에 존재하는 엄청난 수의 유명무실한 위원회 중의 하나로 전락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내규로 다음 사항이 규정되어야겠다.

- ① 연간 최저의 개최회수를 정하는 일
- ② 위원회 산하에 「전문분과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두어 활용하는 일
- ③ 정체개발 및 전의사항 등을 시행결과를 보고서로 간행하여 공표하는 일
- ④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요청하면 즉시 임시회의를 개최토록 하는 일

이러한 당면 목표의 추진을 위해 상기 위원회의 위원회장을 받아 이를 수락한 도서관계 인사들은 그각오가 새로워야만 하겠다. 국가차원의 임무인 만큼,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 할수 있을 뿐 아니라, 혼신적으로 기여할 자세를 필요로 한다. 안이한 명예직 의식에 머무를 때는, 주어진 제도적 장치를 쓸모없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도서관계에 누를 끼칠 것이다.

## 2) 전문직 단체

선진국의 경우, 그나라 도서관협회가 도서관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해온 사례는 얼마든지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창설 이후 많은 기여를 해왔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도서관협회의 실상은 어떠한가? 4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국가단위 협회로서는 너무 무기력하다. 한예로, 연간 재정규모는 10년전에 비해 겨우 2배 정도에 이르고 있을 뿐이며(82년 : 7,500만원, 91년 : 1억 5천만원), 직원수는 20

년전(72년)에 비해 오히려 절반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도서관발전에 관련된 국가차원의 사업을 발의하여 이를고, 뒷바라지할 의욕이나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는 전적으로 도서관인 모두의 책임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고 모든 도서관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는가. 수십년간 양적·질적으로 팽창한 도서관인 모두의 힘을 끌어들여, 자신들의 단체를 강하게 하도록 앞장서는 일은 바로 회장단, 임원진 그리고 사무국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우리 도서관인들은 협회 운영에 앞장서는 분들의 노고에는 물론 경의를 표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분발을 갈망하고 있다.

## 3) 도서관정책과

수십년 동안 숙원사항이었던 도서관행정 전담부서가 드디어 문화부에 과단위로 신설되었다. 일부 선진국처럼 국단위까지 못된 것은 아쉬운 일이나, 그래도 도서관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창구의 역할을 바라는 도서관계의 기대를 한껏 모으고 있다. 발족된지 일천한 전담부서에 대해 도서관계는 아낌없는 격려를 보냄과 동시에 앞으로의 활동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주시하여야만 할 것이다.

## 2. 전문직 인력 확보 및 배치

도서관이 「어떠한 수준」까지 되어야겠다는 주장에는 으레히 직원·자료·시설 등의 법적기준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논의가 뒤따른다. 그런데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는 미진하다는 그 법적기준이나마 정해진 기한내에 「어떻게」 시행되도록 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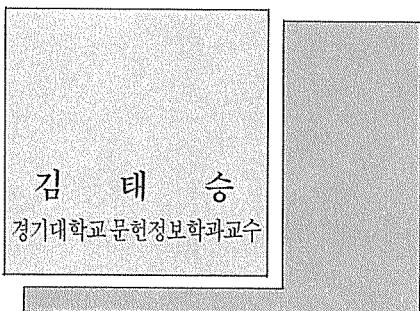
예를 들어, 현행법에 의하면 학교도서관의 경우 1966년까지는 도서관마다 사서교사, 겸임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사서) 중 최소한 1명 이상 배치하도록 되어있다. 1989년 현재 전국 10,576개교 중 6,547개교가 학교도서관을 두고 있는데 사서교사는 고작 828명 뿐이다. 앞으로 4년내에 나머지 5천여 개교에 「어떻게」 사서교사를 배치하여 법적기준을

충족시키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과 대책이 논의되어야 할 때이다.

또한 공공도서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1996년 말까지 공공도서관장을 사서직으로 보하도록 되어있다. 작년말 현재로는 조사가능한 198개 도서관 중 16개관(8.08%)만이 사서직 관장이었다. 앞으로 4년내에 전국 267개 공공도서관에 「어떻게」 사서직 관장을 보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는 역시 심각한 과제이다. 관장이 될 수 있는 상위직 사서의 수는 앞으로의 승진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부족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4~5급 공무원 사서의 부족현상을 타개하고, 우수인력을 공공도서관에 유인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다음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즉, 5급공무원 「행정고등고시」에 사서직도 포함시켜 임용하는 방법이다. 「공무원 임용령」에는 행정고등고시에 공안직·행정직군의 각 직렬을 포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행정직군에 속한 사서직렬도 가능할 수는 있다. 재정직·사회직·교육직 등 각 전문분야가 해당 분야의 전문적 필요에 따라 행정고등고시의 대상분야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사서직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원래 정책토론이란 발표자들의 발표내용을 듣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점이나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으신 것 같아서 발표내용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할까 합니다.

먼저 문화예술영역에 도서관문화를 어떻게 수용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도서관정책이 문화부로 이관되면서 도서관이 문화예술영역에 수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분야에서 도서관을 과연 통일영역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서관분야에서 문화예술쪽을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공공도서관이 지역문화시설의 성격을 가지면서 기존의 문화시설들 즉, 미술관, 박물관, 문예회관, 문화원등과 협력하여 높은 질의 삶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문화향수권을 만족시키는데 부응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들기관과 그 기관의 구성원들은 아직도 상호 이질감을 느끼고 거리감이 상존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문화예술기관들이 문화부라는 한솔에서 용해되어 같은 식으로 어우러질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서관의 명실상부한 문화영역에의 수용을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 1) 도서관이나 도서관협회가 문예진흥기금, 공익 자금등의 수혜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 2) 예술원회원의 구성에서 장차는 도서관부문이 수용되어야 합니다.
- 3) 정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문화상시상이나 훈포장수여에 도서관부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4) 전국도서관인들의 모임인 도서관협회의 회관전립과 같은 도서관인들의 숙원사업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이와같이 도서관이 문화예술분야에 용해될수있는 즉, 도서관인들이 동류의식을 느낄수있도록 가시적인 대책을 문화부에서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할때 도서관이 명실상부한 문화기관의 일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할수 있을것입니다. 이는 도서관정책이 문화부로 이관되는데 전폭적 지지를 보냈던 전국도서관인들의 기대에도 부응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통일에 대비한 도서관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교유회담을 위시하여 각계각분야별로 남북간의 교류와 교환이 실현되고 있습

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장차 도서 관계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우선은 남북간의 자료와 인원이 교환·교류대상이 되리라 믿지만 공동분류 표, 공동목록규칙, 공동MARC, ISBN체계등 기술적 문제의 토의도 예상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도서관 실정을 너무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북한에 대한 도서관현황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통일에 대비한 도서관정책을 위한 북한도서관 문제 연구팀을 발족시키고 이 연구회에서 통일을 대비한 남북도서관 문제를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인들의 모임이 있을 때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을 정부에 의존하고 촉구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자체입니다. 중앙집권적 행정이 본격적으로 지방자치 시대로 이행되면 지방공공도서관에

미치는 영향도 많이 변화되리라 생각됩니다. 장차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공공도서관이 살아남을수 있으면 도서관 운영의 주체인 우리들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예산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기준등에 도서관예산항목이 설정될때까지는 지금과 같이 "예산홍정"이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지방재정의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각급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등의 선출직 의원들에게 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구하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도서관인들의 적극적 노력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인들의 도서관중흥을 위한 홀로서기와 같은 노력이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때 이상적인 도서관의 장래가 보장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原稿募集

〈도서관문화〉誌는 700여 단체회원과 1,300여 개인회원의 대변자로서 보다 알차고 유익하게 꾸미고자 회원 여러분의 응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내용 : 가) 도서관학 및 정보기술의 학술이론과 실무에 관한 논문  
나) 도서관계의 국내외소식, 회원人事소식  
다) 도서관과 관계되는 수필 또는 수기  
라) 기타
2. 보내실 곳 : 137-70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2동 산60-1  
전화 : 535-4868 · 5616
3. 기타 : 가) 원고를 보내실 때 약력과 사진 1매 ("도서관문화" 자료실 영구비치용)를 첨부바랍니다.  
나)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稿料를 드립니다.

圖書館文化 편집실